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158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3.10.3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6.13]

[sfcare23@daum.net]
[www.carernuri.net]

케어누리

케어누리 정보공개서

케어누리 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04. 28.

케어누리 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41, 4층 (중곡동, 공유공간나눔)

전화: 02-2135-3023

팩스: 02-467-8373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본부 / 070-5133-011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8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3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4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2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6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8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1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43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o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케어누리 주식회사	케어누리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41, 4층 (중곡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09.05	2023.10.01	민동세	02-2135-3023	02-467-8373
	법인등록번호	110111-8734497	사업자등록번호	447-88-0286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o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민동세	케어누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41, 4층 (중곡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민동세	02-2135-3023	02-467-8373
사내이사	김승호	케어누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41, 4층 (중곡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민동세	02-2135-3023	02-467-8373
사외이사	이현주	케어누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41, 4층 (중곡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민동세	02-2135-3023	02-467-8373
감사	조남식	케어누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41, 4층 (중곡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민동세	02-2135-3023	02-467-837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o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케어누리]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케어누리	돌보다라는 영어 '케어(care)'와 세상을 예사롭게 이르는 순우리말 '누리'의 합성어로 '함께 돌보는 세상'을 뜻함
상 호	늘푸른돌봄센터 ○○점	해당 지역명 표기 가맹전 점포명을 사용할 수 있음(협의)
상표(서비스표)③		서비스표 상표등록번호: 제40-2336236호 제40-2336189호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 케어누리(CareNuri)는 '돌보다'는 뜻의 영어 '케어(Care)'와 '세상'을 예스럽게 이르는 순우리말 '누리(Nuri)'를 합성한 말로 “함께 돌보는 세상”을 뜻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케어누리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며, 케어누리 서비스의 철학은 “존엄케어”에 있습니다.

○ 늘푸른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가 직접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명칭으로 2025년 현재 서울시 광진구, 강서구, 노원구, 영등포구, 중랑구에서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창업으로 가맹점을 계약하는 경우, 늘푸른돌봄센터 ○○점(시군구 명)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미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면서 가맹점에 계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상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늘푸른돌봄센터 상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케어누리 주식회사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를 이어주는 공익기업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 모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케어누리 정관 제2조)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2023년			20,000			
2024년	34,037	5,790	28,246	13,000	8,221	8,246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민동세	대표이사	2001.3.~2004.6.	광진주민연대 사무처장	실무총괄
			2004.7.~2008.2.	대통령자문위원회 행정관	사회정책
			2008.3.~2013.3	늘푸른돌봄센터 대표	회사총괄
			2011.3~2012.10	(주)온케어 서울지역본부장	지역본부총괄
			2012.3~2014.2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 회장	협회총괄
			2014.3~현재	한국돌봄 사협 기획이사	조합임원
			2013.4~현재	사협 도우누리 이사장	조합총괄
	이현주	이사	1992.5.~2008.6.	성동주민의원 실장	건강관리사업
			2008.7~2013.6	늘푸른돌봄센터 실장	실무총괄
			2013.9~2020.2	서울시어르신종사자지원센터 사무국장	실무총괄
			2020.3~2021.2	광진아동발달센터 센터장	운영총괄
			2021.3~2023.2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운영총괄
			2023.3~현재	늘푸른돌봄센터 센터장	운영총괄
	김승호	이사	2013.5~2016.1	광진마을생태계지원단 단장	실무총괄
			2016.2~2019.2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실장	마을자치기획
			2019.8~2022.6	광진구마을자치센터 센터장	운영총괄
			2022.7~현재	사협 도우누리 본부장	가맹사업담당
	조남식	감사	2007.~2011	(주)웨이브코리아 경영이사	회사임원
			2012.3~2013.10	늘푸른돌봄센터 본부장	사업기획
			2013.11~2021.2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운영총괄
			2021.3~현재	사협 도우누리 센터장	센터운영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해당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	4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①	사업내용②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케어누리 (상표권)	해당상표를 계약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23.8.31. 출원 2025.3.27. 등록	출원 제40-2023-0157852	민동세	2035.3.26
			등록 제40-2336189		
		2023.8.31. 출원 2025.3.27. 등록	출원 제40-2023-0157853	민동세	2035.3.26
			등록 제40-2336236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케어누리 가맹사업 현황

1. 케어누리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3년 11월 14일(가맹점 계약일)

2. 케어누리 가맹사업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케어누리(주)	케어누리	민동세	2023.10.1.~현재	서울시 광진구 긴고로랑로41, 4층(중곡동)

3. 케어누리 업종

영업표지	업종	
케어누리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케어누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4	4	-	11	11	-
서울	-	-	-	4	4	-	11	11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케어누리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0	4	-	-	-	4
2024	4	7	-	-	-	11

6. 케어누리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는 케어누리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해당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 케어누리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⑦	11	929,432	41,665	1,546,561	189,008	281,571	16,319	
서울	11	929,432	41,665	1,546,561	189,008	281.571	16,319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 당사의 가맹점 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청구 금액을 매출액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당사의 가맹점 11개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9개 가맹점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 수치로 포함하였고, 6개월 미만 영업한 2개 가맹점(강서점, 영등포점)매출액은 실제 영업한 개월수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1개가 아닌 실제 9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8. 케어누리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케어누리 가맹점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어누리 가맹은 운영형 가맹으로 가맹 계약전부터 영업하고 있어 24년 전체 영업 기간으로 평균 기간을 산정했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1	7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2024년]에 [케어누리]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케어누리 가맹사업자와 분담하는 광고비 및 판촉비의 기준은 33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	-	-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IBK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기업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IBK기업은행	1566-2566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IBK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IBK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케어누리(주)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예치신청서는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으로 당사의 가맹본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또한 IBK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케어누리(주)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케어누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사무비품 구입 및 임대비용, 오픈행사비, 초기 인건비와 기타 운영경비 등이 소요되며 이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해당 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4,300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창업 개맹점
	8,800				운영 가맹점
가입비	3,300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계약금 성격의 금전	창업 가맹점(케어누리 상호 사용)
	1,100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해지		운영 가맹점(독립된 상호 사용)
교육훈련비	2,200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교육 시작 5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시작 후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컨설팅비	3,300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컨설팅 후	창업 가맹점(케어누리 상호 사용)
	1,100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해지		운영 가맹점(독립된 상호 사용)
실습비	2,200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실습 시작 5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실습시작 후	창업 가맹점(케어누리 상호 사용)
	1,100				운영 가맹점(독립된 상호 사용)
초도물품비	3,300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물품 공급 5일 이전에 계약 해지	물품 공급 후	물품이 공급되면 반환되지 않음

□ 최초 가맹비 상세 내역

- 가입비 : 상표 및 상호 이용권, 가맹사업 지역 독점권
- 교육훈련비 : 케어누리 브랜드사용법, 케어누리 장기요양서비스 철학, 케어누리 장기요양기관 노무관리, 케어누리 가맹점 행정 및 표준서식 사용법 등 케어누리 가맹점사업자와 종사자 대상 교육 제공
- 컨설팅비 : 케어누리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가 및 사업장 개설, 운영설계(회계, 노무, 행정 등), 재가장기요양사업 운영 실제 등을 가맹점사업자 개별 맞춤 컨설팅 제공
- 실습비 : 대표 가맹점(늘푸른돌봄센터)에 가맹점사업자(또는 관리책임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운영실습을 통해 현장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제공
- 초도물품비 : 케어누리 홍보 및 판촉물품

- 당사는 준엄케어와 공익기업을 추구하는 기업정신에 따라 2025년도 가맹계약을 하는 가맹점에게는 교육훈련비, 컨설팅비, 실습비, 초도물품비는 받지 않고 가입비만 받습니다.

2) 당사는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창업 가맹점	영업 가맹점
합계	14,300	8,800
가입비	3,300	1,100
교육훈련비	2,200	2,200
컨설팅비	3,300	1,100
실습비	2,200	1,100
초도물품비	3,300	3,300

- 당사는 준엄케어와 공익기업을 추구하는 기업정신에 따라 2025년도 가맹계약을 하는 가맹점에게는 교육훈련비, 컨설팅비, 실습비, 초도물품비는 받지 않고 가입비만 받습니다.
- 가맹예치금은 가맹계약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귀하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가맹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예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업무프로그램	별도계약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업무시스템(선택)
회계프로그램	별도계약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회계시스템(선택)

- 금액은 프로그램 회사별로 상이하여 프로그램 업체와 계약하면서 확인하시고 지불하시면 됩니다.
- 당사는 케어누리 상표 및 늘푸른돌봄센터 상호(선택)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 가맹점 내부의 인테리어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는 귀하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상표 및 상호에 대해서는 당사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 원칙 : 시군구에 하나의 가맹점과 협약 단, 인구 4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 가맹점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2개 가맹점과 협약할 수 있음 ○ 창업 가맹점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조사 및 시장분석(가맹희망자 또는 전문업체 의뢰) → 가맹희망자 동의 여부를 구함(확정) ○ 영업 가맹점 : 가맹희망자가 영업 중인 지역 파악 → 지역조사 및 시장분석(가맹희망자 또는 전문업체 의뢰) → 가맹희망자 동의 여부를 구함(확정 또는 변경) ※ 지역조사 후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입지선정 원칙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선정에 조언하고, 지역 조사를 돕습니다. 최종 입지선정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이며, 지역조사 후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자격(계약, 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아래 사항중 하나 이상 해당 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맹점관리자	특별한 기준 없음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제공인력	특별한 기준 없음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케어누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천원)		총액의 20%	50%	30%
납부일		계약일+5일	계약일+1월	계약일+2월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수수료)	케어누리(주)	없음				
가맹회비	케어누리(주)	10	매월 25일			
광고분담금	케어누리(주)	광고별로 분담	별도 공지	광고 취소	광고 후	
판촉분담금	케어누리(주) 또는 협력업체	판촉별로 분담	별도 공지	판촉 취소	판촉 후	
교육훈련비	케어누리(주)	실비	별도 공지	교육 취소	교육 후	교육 필요시 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	케어누리(주) 또는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Ⅶ.가맹본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시스템사용료	(지정업체)		매월 일			
지연이자	케어누리(주)	연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금전지급의무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전년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황 및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하여 일정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시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브랜드 관리, 노무관리, 교육관리를 모니터링하고 경영관련 컨설팅을 시행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급하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케어누리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케어누리(주)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 다만, 양수인이 케어누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가맹점의 지위로 가입비를 제외한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금(교육훈련비, 컨설팅비, 실습비, 초도물품비)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케어누리 가맹사업의 경영철학과 가치, 제 규정,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데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매뉴얼,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활동 중 발생한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케어누리 가맹계약서 제32조 (계약종료 후 조치)

-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매뉴얼,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기관 중 발생한 계속가맹금의 미납부금, 채무, 가맹본부와 합의된 배상금 등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 ④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이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종결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는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케어누리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위 표의 거래 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서비스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품목 및 규격은 가맹점의 규모와 사업형태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③
		상한	하한	
	해당사항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케어누리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케어누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없음				2024년 기준
계					

- 2) 당사가 케어누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없음					2024년 기준
계						

3. 서비스·상품,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서비스·상품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②	위반시 책임③	비고
방문요양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방문목욕			
케어누리 상품			
케어누리 서비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서비스·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서비스·상품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서비스·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서비스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 서비스는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다른 가맹점 사업자				
관계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고객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서비스·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에서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 등급별로 보험수가가 다르게 책정되며 2025년도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이용수가의 0~15%의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93,400	1,495,700	1,370,600	1,177,000	657,400

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4.12.31.)

- 귀하는 위 표에 기재된 월 한도액 이상 가격으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징수할 수 없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②	
	가맹본부	계열회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련된 사업	케어누리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케어누리 브랜드가 표시된 상품과 서비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1. 행정구역 시군구 단위 기준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2. 시군구 주민등록인구 40만명 인구 기준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운영중인 가맹점을 중심으로 1Km 거리 기준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가맹본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 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영업활동 30일 전에 가맹본부에 알려주어야 하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사실을 공유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케어누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서비스나 상품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케어누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서비스나 상품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케어누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서비스나 상품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으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서비스나 상품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 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광고, 홍보하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도 있으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합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케어누리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1항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인력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1항
○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맹본부가 정한 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1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1항
○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 교육훈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 경영지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방문점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제23조 광고, 제24조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 영업표준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28조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제34조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	제31조 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1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경우	제3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1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계약서 제28조	가맹점사업자가 60일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최초가맹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최초가맹금 중 교육훈련비, 컨설팅비, 실습비는 면제되지 않으며 양도 등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케어누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

고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케어누리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18:00	정해진 영업일	필요 시 영업 가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귀하가 부득히 휴업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게 휴업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5명	직접 근무	정책으로 인정되는 자	가맹점사업자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사무실(사업장)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케어누리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및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브랜드광고	전액부담	없음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매출총액비율 또는 가맹점 일관배분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50%	할인금액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매출총액비율 또는 가맹점 일관배분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50%	증정상품 출하가 50%		
	팸플렛 등 제작	제작비용 30%	제작비용 70%		

- 만약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시군구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진행, 집행된 광고비에 대해서 귀하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에 의해 비밀로 관리된 각종 매뉴얼, 사업장운영방법, 고객응대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매뉴얼,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및 이메일 문의, 가맹희망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	
②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9~55	
③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④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54	
⑤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D-54~49(5일)	
⑥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50~20(30일)	
⑦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0~27(3일)	
⑧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6~22(5일)	
⑨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1~2(20일)	
⑩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창업형 가맹점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상표지 관련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케어누리 상호 및 상표가 표기되는 비용에 한정)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경우 20% 이내
지급절차	○가맹점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협의 및 부담금 결정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비용부담 제외사유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을 개선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점포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경영지원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경영지원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피어(peer) 컨설팅	성장한 가맹점사업자를 컨설턴트로 지정, 동료 센터장으로부터 현장성 있는 컨설팅 제공	서비스 이용자가 50명 이하인 경우	1년	경영컨설팅 고충자문	일부비 요부담
노무컨설팅	노무관련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가맹본부기준, 가맹점 요청	가맹계약기간	노무컨설팅	일부비 용부담

- o 경영상 지원정책은 필요시 실비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 비용을 산출한 명세서를 귀하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케어누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점 교육 (신규교육)	케어누리 서비스 철학 케어누리 가맹점 노무관리 케어누리 브랜드 관리	강의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필수 교육
	케어누리 가맹점 운영실습	실습교육		필수 교육
개점 후 교육 (보수교육)	케어누리 서비스 철학 케어누리 가맹점 노무관리 케어누리 브랜드 관리	강의교육	매년 3월~12월	필수 교육
	케어누리 가맹점 운영실습	실습교육	필요시	선택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케어누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점 교육	강의교육	8시간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실습교육	80시간	2,200 (창업가맹점) 1,100 (운영가맹점)	
개점 후 교육	강의교육	8시간	550	매년 필수 이수
	실습교육	40시간	1,100	선택 교육

- 위 교육시간 및 비용은 창업형 가맹점에 대한 비용으로,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 형태 및 시장여건 등에 따라 그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를 포함 가맹점 종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한 내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2-2135-302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상담과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f@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